

#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

제정 1999. 8. 28 개정 2000. 2. 29  
개정 2009. 11. 6 개정 2011. 2. 25  
개정 2011. 5. 30 개정 2012. 4. 19  
개정 2012. 11. 12 개정 2013. 03. 08  
개정 2014. 04. 07 개정 2014. 11. 11  
개정 2016. 2. 25. 개정 2018. 6. 8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43조에 의하여 산업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

제2조(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) ①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산업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,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 (개정 2011. 5. 30, 2013. 03. 08)

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
2. 대학원 각종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 관한 사항
3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5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6.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등 특별과정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입 학

제5조(선발시기)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 시 마다 공고한다.

제6조(학과별 모집정원) 학과별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1. 5. 30)

제7조(입학지원 서류)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 서류는 매 모집 시에 모집 요강에 정한다. (개정 2011. 2. 25)

제8조(입학시험) ① 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.

(개정 2011. 2. 25)

1. 전공교과목에 대한 구술평가(개정 2016.2.25.)
2. 면접평가(개정 2016.2.25.)
3. 그 밖에 서류심사(신설 2000. 2. 29)

② (삭제 2016.2.25.)

③ 제1항에 관한 평가방법은 매 모집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(개정 2000. 2. 29)

제9조(특별전형) ① 입학 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, 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합격자 결정)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·발표한다.

제11조(입학·등록)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,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.(개정 2011. 2. 2, 2018.6.8.)

② 학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수료 후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후 등록을 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6.8.)

#### 제4장 교육과정·개강교과목·수강신청·선수교과목·학점교류 및 성적평가

제12조(교육과정 편성) ①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

제13조(개강교과목)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 학기 개강교과목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공고한다.

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기준 등의 심의를 거쳐 비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5. 30, 2014. 11. 11)

④ 각 학과의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2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,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 5. 30)

제14조(수강신청 및 교과이수)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교과목에 의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매 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.75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. (신설 2011. 5. 30)

④ 논문제 또는 무 논문제의 선택은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하며, 변경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4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한다.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. (신설 2011. 5. 30)(개정 2012.04.19., 2014.4.7., 2016.2.25.)

구 분	공통교과목	전공교과목	이수학점
논 문 제	3 ~ 12	12 ~ 21	24
무 논문제	3 ~ 12	18 ~ 27	30

제15조(폐강) 교과목 당 수강 인원이 2명 이하일 때에는 개강하지 아니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.

제16조(선수교과목) ① 각 학과별 선수교과목은 이 대학교의 학과(학부, 전공)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②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학칙 제22조의 학점 외에 매 학기 6학점까지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③ 선수교과목의 교과목 당 성적등급이 B<sup>+</sup>이상이어야 이수로 인정한다.

④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수교과목은 따로 개설할 수 있다.

제17조(학점의 교류 및 인정) ① 학칙 제27조에 따라 학생이 이 대학원과 학점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기간전에 교류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과 수강을 원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1. 5. 30)

제18조(재 이수)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 이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이고 재 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.

제19조(성적평가) ① 교과목별 학업 성적은 시험 또는 실험 및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.

② 제1항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기말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실험 및 연구보고서는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지도교수, 논문지도위원회

제20조(지도교수)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 생활 및 논문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지도교수 1명당 지도 학생수는 매 학년 3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.

③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21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2명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(개정 2012. 11. 12, 2016.2.25.)

##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

제22조(시험시기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·공고한다.

제23조(시험위원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24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,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25조 (종합시험) ① 종합시험은 각 학과의 전공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 18학점(성적 평균등급 B<sup>+</sup>)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(개정 2016.2.25.)

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26조(재시험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##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

제27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외국어시험 및 종합 시험에 합격하고, 각 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학위논문”이라 한다)을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5. 30)

제28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 삭제 (개정 2011. 5. 30, 2016.2.25.)

제29조(논문작성계획서 제출) 학위논문 제출예정자는 논문제출 6개월 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학위논문 제출시기) ① 심사용 논문은 5월 및 11월까지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를 완료한 논문은 6월 30일 및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1조(학위논문 작성)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,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위논문은 표지·속표지·인준서·목차·영문·본문·참고문헌·부록 순으로 구성하며,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장 따로 정하는 “논문작성 요령”에 의한다.

③ 학위논문 작성, 보고,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신설 2011. 2. 25)

제32조 (학위논문 제출 부수)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 완료한 학위논문은 인쇄본 5부와 전자논문 디스켓 4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 (개정 2011. 5. 30)

제33조 (학위논문심사위원회) 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위촉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.

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한다. 다만,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,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34조(학위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논문공개 발표회를 거친 후 심

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
② 논문심사는 초심(구술시험 병행)과 중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초심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의 수정·보완 여부의 확인을 중심으로 한다.

③ 논문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5조(학위논문 공개발표) ①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해당 학과교수와 소속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실시한다.

② 공개발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6조(학위논문 판정) ① 학위논문 심사는 “가” 또는 “부”로 판정한다.

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서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“가”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.

제37조(구술시험)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행한다

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③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논문심사 결과보고)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##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

제39조(학위수여) ①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제27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(개정 2018.6.8.)

1.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사람
2. 수료에 의한 학점 이외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

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<별지 1호>서식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<별지 2호>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. (신설 2011. 2. 25, 2018.6.8.)

제39조의2(학위수여 취소)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(신설 2018. 6. 8.)

제40조(수료인정)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40조의 2(수업연한단축) ① 학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 할 때에는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0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(신설 2009. 11. 6)(개정 2013. 3. 08, 2018. 6. 8.)

② (삭제 2013. 03. 08)

## 제9장 장학금

제41조(장학금)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그 밖의 교내·외 장학금 등으로 한다.

② 장학금 규모,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순천대학교장학금지급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00. 2. 29)

이 규정은 2000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1. 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의2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1. 2. 25)

이 규정은 2000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5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14조제4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개 학기 이하를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.

부 칙(2012. 4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1. 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03. 0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4. 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4조제4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,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2014. 11. 11)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2. 25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석제 호

## 학 위 기

성 명

생년월일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○○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.

논문 :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산업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순 천 대 학 교 총 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학위등록번호 : 순천대 석

석제 호

# 학 위 기

성 명

생년월일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○○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 총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학위등록번호 : 순천대 석

제 호

## 수 료 증 서

성 명

생년월일

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○○○학과의 전 과정을  
수료하였음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장(학위) ○ ○ ○ (인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순천대학교 총장(학위) ○ ○ ○ (인)